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23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591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변 론 종 결	2023. 11. 22.
판 결 선 고	2024. 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8,140,000원, 지방교육세 1,646,000원, 농어촌특별세 13,168,000원 및 가산세 19,335,980원 합계 182,289,980원[1]의 부과처분을

1)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가산세 합계액을 20,558,130원, 취소를 구하는 세액의 총 합계를 183,548,07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산세 합계액은 19,335,980원, 총 부과세액의 합계는 182,289,980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23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20. 12. 21. 아버지 C로부터 ○○ ○○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57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시가표준액 1,64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1세대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취득세 등 57,6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유지·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별도 세대로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2019. 1.경 미국으로 출국한 비거주자로서 국외소득만 입증되므로 소득인정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를 원고의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본다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아버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6. 18.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48,140,000원, 지방교육세 1,646,000원, 농어촌특별세 13,168,000원 및 가산세 19,335,980원 합계 182,289,9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15.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19.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23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9. 1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11. 25. 기각되었고, 그 결정서가 2021. 12. 1. 원고의 대리인 세무사 F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2. 10.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1. 19.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4-23

받은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